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핵심설명서

< 기본정보 >

최고금리 (*22.02.28 세금납부 전)	연 5.5%	기본이율(연 5.0%) + 우대이율(연 0.5%p) - 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 15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으로 가입 시,	
적립방법	매월 20만원 이내 자유로이 적립 ※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한 다른 은행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전체 40만원 범위 내 적립 가능하며 1개 금융기관에서는 월 20만원 한도 내로 적립 가능		
가입대상 (금융회사별 1인 1계좌)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 이내 (일 단위) - 적금 만기일은 가입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최고가입금액	매월 20만원 이하
일부해지	X	- 중도해지만 가능	
세제혜택	비과세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예금자보호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p>▷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단, 보유기간별 최저이율은 아래와 같음</p> 
	<p>▷ 창구 방문을 통한 만기 해지 가능</p> <p>※ 1% 이자지원금은 '21.10.14 부터 만기해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전에 해지한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p> <p>※ 1% 이자지원금은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 후 제공하며,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 없음</p>
예금만기 (1% 이자지원금)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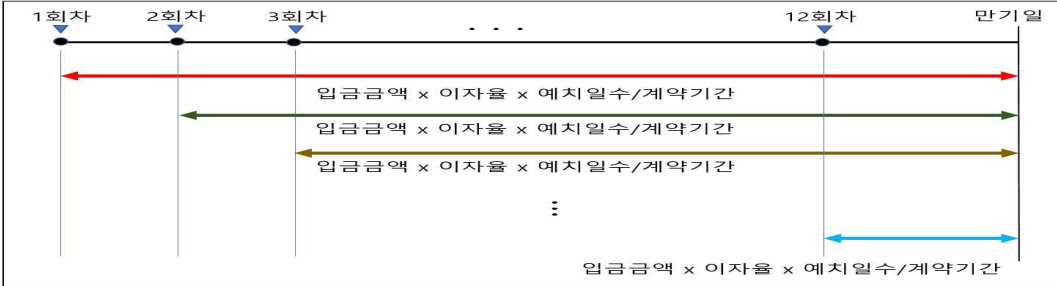
1 | 상품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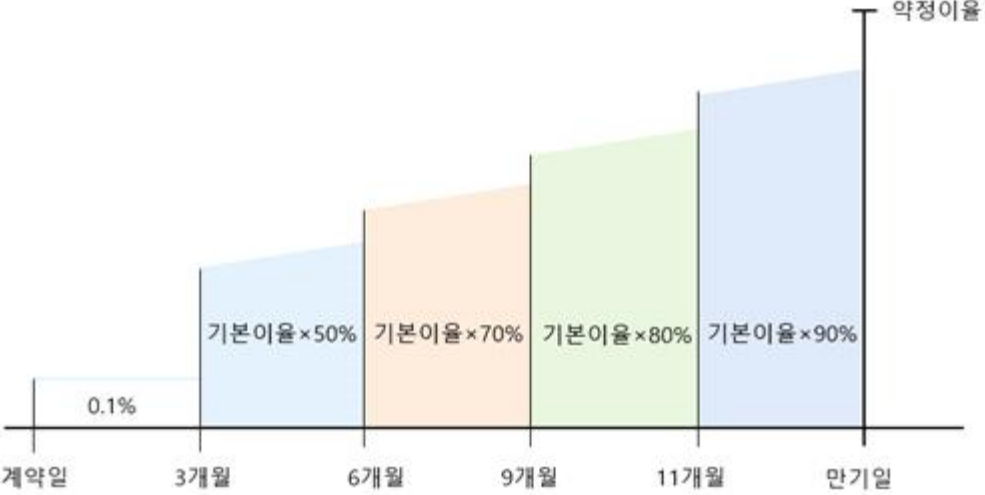
- 상품명 :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

2 | 거래 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금융회사별 1인 1계좌)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상품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적립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범위 내 적립 가능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24개월 이내 가입 시점에 일단위로 지정☞ 적금 만기일은 가입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												
기본이율 (세금납부 전 '22.02.28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우대이율· 기본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table border="1"><thead><tr><th>계약기간</th><th>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th><th>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th><th>15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th></tr></thead><tbody><tr><td>기본이율</td><td>연 3.5%</td><td>연 4.0%</td><td>연 5.0%</td></tr><tr><td>최고이율</td><td>연 4.0%</td><td>연 4.5%</td><td>연 5.5%</td></tr></tbody></table>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기본이율	연 3.5%	연 4.0%	연 5.0%	최고이율	연 4.0%	연 4.5%	연 5.5%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기본이율	연 3.5%	연 4.0%	연 5.0%										
최고이율	연 4.0%	연 4.5%	연 5.5%										

구 분	내 용																											
<p>우대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p 우대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실적 인정 기간^{주1)}의 1/2 기간 이상 이 적금으로 적립한 경우* - 연 0.3%p ② '실적 인정 기간^{주1)} 동안 우리카드(체크/신용)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지정한 후, 매월 카드 결제실적 보유 - 연 0.1%p ③ 이 적금의 신규 시점에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주2)}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연 0.1%p <p>※ 주1) 실적 인정 기간 : 신규월 및 만기월을 제외한 가입기간 주2)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보유 시 우대 적용</p> <p>※ 자동이체 우대금리를 적용을 위한 적립기간(실적 인정 기간의 1/2 기간 이상) 예시 예) 2018.08.29. 신규 고객의 만기가 2019.04.10.인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의 1/2 : 9월/10월/..2월/3월 ☞ 7개월×1/2 = 3개월 (소수점 절사)</p> <table border="1" data-bbox="391 801 1428 936"> <thead> <tr> <th>신규월</th> <th colspan="7">실적 인정기간</th> <th>만기월</th> </tr> </thead> <tbody> <tr> <td>'18.8.29</td> <td>'18.9월</td> <td>'18.10월</td> <td>'18.11월</td> <td>'18.12월</td> <td>'19.1월</td> <td>'19.2월</td> <td>'19.3월</td> <td>'19.4.10</td> </tr> <tr> <td>실적제외</td> <td>자동이체</td> <td>자동이체</td> <td>자동이체</td> <td>자동이체</td> <td>직접입금</td> <td>직접입금</td> <td>직접입금</td> <td>실적제외</td> </tr> </tbody> </table> <p>☞ 신규월, 만기월은 실적 인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018.9월~ 2019.3월동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적립 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 적용</p>	신규월	실적 인정기간							만기월	'18.8.29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10	실적제외	자동이체	자동이체	자동이체	자동이체	직접입금	직접입금	직접입금	실적제외
신규월	실적 인정기간							만기월																				
'18.8.29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10																				
실적제외	자동이체	자동이체	자동이체	자동이체	직접입금	직접입금	직접입금	실적제외																				
<p>이자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p>이자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 건별로 입금일 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p>원금 및 이자지급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p>만기후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391 1442 1437 1630">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이율</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 미만</td> <td>만기시점 약정이율 × 50%</td> </tr> <tr> <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 <td>만기시점 약정이율 × 30%</td> </tr> <tr> <td>3개월 이상</td> <td>만기시점 약정이율 × 20%</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만기시점 약정이율 × 30%	3개월 이상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경과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만기시점 약정이율 × 30%																											
3개월 이상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p>만기이자 산출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중도 해지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보유기간</th> <th style="width: 40%;">이 율</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0.1%</td> <td></td> </tr> <tr> <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 <td>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저이율 연 0.15%</td> </tr> <tr> <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td> <td>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td> </tr> <tr> <td>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td> <td>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td> </tr> <tr> <td>11개월 이상</td> <td>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td> </tr> </tbody> </table> <p>※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p>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연 0.1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보유기간	이 율	비 고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연 0.1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p style="text-align: center;">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방법(예시)  <p>※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예금자보호 여부</p>	<p>해당</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font-size: small;">예금보험공사</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large;">보호금융상품</p> <p style="font-size: x-small;">1인당 최고 5천만원</p>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재예치</p>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중도인출</p>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양도 및 담보제공</p>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까지 가능															

구 분	내 용
<p>세제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 - 2023.12.31.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주1)}은 적금 가입·추가납입·1% 이자지원금' 지급·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p>자동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 등록 가능, 단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함
<p>무통장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품은 무통장 거래가 불가능
<p>추가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적립식으로 월 입금금액 20만원 한도 내 추가입금 가능
<p>계약해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가능
<p>제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로 가입 불가 •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
<p>위법계약 해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p>휴면예금 및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가입 시점에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및 무료상해보험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은행 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 ②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고객 • 우리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적금 만기일까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주1)} 수수료 월 5회 면제 <p>※ 주1)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p>																		
부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가입 시점에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및 무료상해보험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은행 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 ②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고객 • 무료상해보험(DB손해보험 제공) 가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간 : 적금 신규가입 다음 월 15일부터 21개월 동안 제공 - 담보내용 (2021.12.31.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363 1303 1449 1980"> <thead> <tr> <th>담보명</th> <th>담보내용</th> <th>보험가입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현역군인 상해사망후 유 장해</td> <td>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td> <td>300만원</td> </tr> <tr> <td>상해흉터복 원 수술비</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td> <td>14만원</td> </tr> <tr> <td>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골절(치아 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td> <td>10만원</td> </tr> <tr> <td>화상진단비</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td> <td>20만원</td> </tr> <tr> <td>의사상자 상해위험</td> <td>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td> <td>3억</td> </tr> </tbody> </table> - 보험관련 상세내용 문의 : DB손해보험 (☎1588-0100) 	담보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현역군인 상해사망후 유 장해	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300만원	상해흉터복 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4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골절(치아 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	20만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	3억
담보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현역군인 상해사망후 유 장해	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300만원																	
상해흉터복 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4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골절(치아 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	20만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	3억																	
연계·제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참조 																		

구 분	내 용
3:1 매칭지원금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합동 「한국형 뉴딜 2.0 추진계획」 및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 지원사업」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의 원본 제출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금되는 적금 납입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차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우리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최대 3개월 소요)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계좌는 3:1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3:1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3:1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1 매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만기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여 3:1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추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3:1 매칭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는 달리,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망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계좌의 해지나 사고(압류, 가압류, 거래중지 등)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 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1 매칭지원금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3:1 매칭지원금 지급불가

3 | 1% 이자지원금

구 분	내 용
1% 이자지원금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의 원본 제출 ▷ 서류^{주1)} 미제출시 : 비과세만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해지 후 소급적용 불가(해지 후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1% 이자지원금' 지급 불가) ▷ 서류^{주1)} 제출시 : 비과세 적용 및 '1% 이자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만기해지 시에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추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이자지원금 지급의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불가

5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입 및 해지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자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예시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19.3.5 / 적금 만기일 2019.3.9.
 - ⇒ 2019.3.9. 이후 적금 해지시 비과세 적용 가능
- 이 적금은 '우리은행'과 '국방부' 및 '병무청' 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우리 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제휴서비스

구 분	내 용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무료상해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준 : 적금 가입 시점에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은행 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 ②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고객 • 무료상해보험(DB손해보험 제공) 가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간 : 적금 신규가입 다음 월 15일부터 21개월 동안 제공 - 담보내용 (2021.12.31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담보명</th> <th style="width: 55%;">담보내용</th> <th style="width: 30%;">보험가입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현역군인 상해사망 후유 장해</td> <td>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상해흉터 복원 수술비</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만원</td> </tr> <tr> <td>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화상진단 비</td> <td>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의사상자 상해위험</td> <td>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3억</td> </tr> </tbody> </table> <p>- 보험관련 상세내용 문의 : DB손해보험 (☎1588-0100)</p>	담보명	담보내용	보험가입 금액	현역군인 상해사망 후유 장해	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300만원	상해흉터 복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4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진단 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	20만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	3억	
	담보명	담보내용	보험가입 금액																	
	현역군인 상해사망 후유 장해	보험기간 중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300만원																	
	상해흉터 복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4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진단 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	20만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보험기간 중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	3억																		
<p>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p>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신규가입일 다음 월 15일부터 21개월 동안 제공 (단,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금의 중도해지시 연계·제휴서비스제공 중단) 																			
<p>연계·제휴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단,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 																			
<p>연계·제휴서비스 제공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신규 시 연계·제휴서비스 가입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